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의결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1998년 12월 18일
- 나. 제출자 :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 다. 회부일자 : 1998년 12월 18일
- 라. 상정일자 : 제82회 서구의회(정기회) 회기중
-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1998년 12월 22일)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회계과장 김동효)

가. 제안사유

- 공유재산은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의 규정에 의거 취득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한 후 의결을 얻어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 동 규정에 따라 98년도에 공유재산(화정복지센터)의 취득을 전액 구비에산으로 취득하여야 할 사항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나. 관리계획내용

-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92년 당시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어린이 공원부지상에 동사무소를 건립하였으나, 신축 당시부터 위법 시비가 있어 해결방안 일환으로 96년도에 동사무소와 복지시설을 갖춘 복합청사 신축계획을 검토하여

- '96. 11. 25 화정3동 복합청사 신축(소요사업비 1,702,231천원)에 대한 의회승인을 받아 추진하였으나 열악한 구재정 형평상 일반회계 예산으로
 - 97년 부지매입비로 332,000천원,
 - 98년 건축물 신축비 300,000천원을 확보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총 632,000천원을 확보하였으며,
 -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98년 주차장 시설비로 400,000천원을 확보하여 총 1,032,00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소요예산을 전액확보하지 못하여 복합청사를 신축 하지 못하고 있던 중
- 광주광역시 재산 13330-15호('98. 9. 27)로 IMF경제 체제하에 서는 경제 사정이 호전될 때 까지 동사무소 신축을 가급적 유 보하라는 지시와
- 열악한 구재정을 감안하여 '98. 11. 30 구정조정 위원회에서 화 정동민의 오랜 숙원 사업인 주민복지센터로 사업이 축소 변경 됨에 따라 화정동 소재의 복지센터용도에 적합한 건물인 대지 150평, 건축물 220평 규모의 복지센터를 매입하여 화정동 복지 시설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 재산 취득승인 요청

- 금번에 승인하여 주실 취득재산은 화정동복지센터로 광주광역시서구 화정동 319번지의 8, 9, 17호에 소재한 대지146평, 건축물227평 규모의 건축물이며 소요예산액은 약57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 취득 재산내역 및 활용방안

- 토지현황

(단위 : m²)

위 치	지목	면적	소유자	활용방안	비 고
화정동 319-8	대지	288.0	이희숙 외1명	복지센타부지	
화정동 319-9	"	152.0	"	"	
화정동 319-17	"	43.0	"	"	

- 건축물 현황

(단위 : m²)

위 치	층별	면적	소유자	활용방안	비 고
화정동319-8외2필지	지하1층	136.5	이희숙 외명	주부취미교실 및 회의실	
"	지상1층	248.5	"	점포임대(경영수익사업)	
"	지상2층	182.0	"	실직자 쉼터	
"				주부 컴퓨터 교실	
"				어린이 컴퓨터 교실	
"	지상3층	182.0	"	독서실(청소년 공부방)	

○ 소요예산 조달방법

- 화정복지센타 매입 소요예산은 기 확보예산 1,032,000천원중에서 570,000천원만 사용하고 사용잔액 462,000천원은 시급히 필요한 예산으로 전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취득가액 및 취득방법

- 소유자는 현시가를 요구하고 있으나
- '98예산 확보액 중 570,000천원의 범위내에서 소유자와 협의 취득 예정이나,
- 공공사업에 필요할 경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10제8항에 따라 2개이상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한 감정가액 산술평균치 금액으로 매입 결정하겠습니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재천)

-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한 취득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하여야하고, 그 취득을 심사·분석하도록 하였음.
- 화정복지센터건립 계획은 현 동사무소가 어린이 공원에 건립되어 건축법상 증개축 또는 용도변경이 불가능하여, '96년 동사무소와 복지시설을 갖춘 복합청사로 신축하려 하였으나 재원확보 등의 문제가 있어, 기존 계획을 축소하여 복지시설이 없는 화정동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해 화정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임.
- 동사무소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기능 전환될 때을 염두해 두고 활용방안, 주민참여도, 기능을 참고하여 추진해야 될것으로 보며
- 주민이 원하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운영 방안과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로 공동의 생활의 터전으로 상호간의 대화의장, 집회장소, 취미활동 등을 활용하는 주민복지센터가 건립되도록 공유재산 취득 관리계획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4. 관련 법 규

○ 지방재정법 제77조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